
대학입학전형 회피 · 배제 가이드라인

2024.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목 차 ❑

① 회피·배제 개요	1
② 회피·배제 대상 및 방법	3
③ 회피·배제 사후 관리	5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입학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선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피·배제에 대한 기본원칙과 운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근거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및 제73조 제1항 3의2

1 회피·배제 개요

① 용어 정의

- ◆ 입학전형 :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 ◆ 입학사정관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을 포함하여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회피 신고 :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이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는 것
- ◆ 배제 : 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
- ◆ 특수한 관계 :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각호) 및 대학 학칙 등에서 정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

- ◆ 선발과 관련된 업무(선발 업무) : 응시생 선발과 관련한 전형 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
 - 단, 부정한 개입 여지가 없는 단순 입학 관련 안내, 사무처리, 시설관리 및 통계처리 등의 업무는 제외

② 기본원칙

-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 대학은 모든 입학전형에 대해서 회피·배제를 운영하여야 하며, 입학전형이 실시되기 이전에 회피·배제에 필요한 규정·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 대학은 입학전형 실시 전에 전체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회피·배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 ◆ 대학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여 부정적인 개입을 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 대학은 회피·배제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피·배제 대상 및 방법

①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배제

- ◆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 ◆ 이때, 원칙적으로 각종 서류(연말정산자료,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등)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 필요에 따라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응시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회피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른 업무 배제

- ◆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때, 대학의 장은 서약서와 신고서 등 회피 신고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 ◆ 입학사정관은 평가가 시작된 이후라도 해당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한 즉시, 대학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 대학의 장은 회피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 대학의 장은 입학 관련 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입학사정관의 업무 배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 >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3 회피·배제 사후 관리

◆ (사후 검증) 대학은 최종 등록자를 대상으로 대학 내 인사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자녀 장학금 및 연말정산자료 조회 등을 통해 사후 검증을 실시합니다.

◆ (부정행위 대응) 사후 검증 결과 합격자와 입학사정관 간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입학사정관이 해당 응시생의 합격에 기여한 경우’ 또는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결과 제출) 대학은 사후검증 이후 최종적으로 수집된 회피·배제 결과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피·배제 시스템’에 제출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안내에 따릅니다.

◆ (자료 보존) 대학은 매 학년도의 회피·배제 운영 결과를 10년 간 자체 보관·관리*하여 입학전형 관리의 공정성이 검증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 2021)』 준수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Q&A

대학입학지원실

대입공정성지원팀

2024. 7. 3.(수)

Q1. 고교 대상 설명회 및 입시 설명회에 참여한 입학팀 또는 교수가 회피·배제하여야 하는지?

- 입학사정관이 전형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4항은 입학사정관과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선발 관련 업무 배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행령 제31조의2 각 호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입시 설명회가 각 호에 해당하는지 및 설명회를 통해 입학사정관과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통상 대학 홍보 등을 위한 고교 대상 일회성 입시 설명회가 법령상의 (과외)교습이나 학교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고교 대상 입시 설명회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교습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입학사정관이 과거 강사의 신분으로 동 설명회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는 시행령 제31조의2제1호 소정의 「학원법」에 따른 교습'에 해당하여 회피·배제하여야 하는 등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입학사정관과 특정 학생 간에 선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이고 특수한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당사자는 이를 학교에 알리고 대학의 장은 선발 관련 업무에서 해당자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2. 고교학점제로 인하여 대학 교수가 고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 회피·배제 하여야 하는지?

- Q1.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 강사가 시행령 제31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출강 형태·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수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성립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대학 교원이 고교 정규 교과를 담당하여 지속적·정기적으로 고교에 출강한 경우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의 학교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의 등을 통해 교수와 특정 학생 사이에 선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이고 특수한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당사자는 이를 학교에 알리고 대학의 장은 선발 관련 업무에서 해당자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3. 자녀가 고3인데, 해당 대학에 지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피·배제 하여야 하는지?

- 해당 대학에 지원하지 않은 경우는 회피·배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입학사정관이 재직 중인 대학에 자녀가 지원하였다면, 자녀가 지원한 입학전형 업무에서는 원천 배제하여야 하며, 입학처(본부) 내 정보 취득 등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칙 등에 따라 엄정하게 입학전형을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Q4. 회피·배제 시작과 종료시점은 어떻게 되는가?

- 회피·배제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용 시점은 선발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피·배제 의무가 발생하는 특수한 관계의 학생이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원서 접수 시점부터, 최종 합격자 명단이 안내되어 해당 전형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5. 배우자가 고교 교사(과거 및 현재)인 경우 회피·배제 대상인가?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및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에 따라, 배우자가 입학연도 개시 직전 3년 이내에 교육한 학생이 입학 전형에 응시한 경우,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대학의 장은 공정한 업무 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배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Q6. 부서 이동을 해야 하는지? 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 대학의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고등교육법령 상의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학사정관의 부서 이동 등 인사 관련 사항은 대학의 장이 결정할 사항이나,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령 상 회피·배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입학처 내 정보 취득 등 입시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자를 업무 배제하는 등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Q7. 고교 교사로 활동하다가 입학사정관으로 이직한 경우?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및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에 따라, 입학사정관이 입학연도 개시 직전 3년 이내에 교육한 학생이 입학 전형에 응시한 경우,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대학의 장은 공정한 업무 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배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회피·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직 중 교육 과정 등을 통해 학생과 개인적이고 특수한 관계가 성립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